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(수입) 인증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	당되는 곳에 √ 3	표시를 합니다.						(9	<u> 앞 쪽)</u>
접수번호			접수일시			처리기간	5일		
신청인	성명(법인은	법인 명칭 및	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은	법인등록번호	및 대표자	생년월일)	
(대표자)	주소								
명칭 제조소						업 허가번	호		
(수입업소)	소재지								
구분	[]품목류 []품목		[]	제조	Ξ.	[] 수입			
명 (제품명,품목	칭 명,모델명)								
분류번호(등급)									
모양 및	구조								
원 재	료								
제조방법									
성	니								
사용목적									
사용방법									
사용 시 주의사항									
포장단위									
저장방법 및 사용기간									
시험규격									
제 조 (수입하거나 제3 위탁하는 경우민	조공정을 전부								
비	고								
「체외진단의 진단의료기기의	_			법 스	행규칙 제8조•	제26조에	따라 위의	라 같이	체외
						년	월		일
		신청	성인(대표자) 성도	명				(서명 또는	- 인)
			담당자 성당	명					
			담당자 전화번:	호					
한국의료기	기기안전정	보원	귀하						

첨부서류	수수료		
삼구시ㅠ	전자민원	방문 • 우편민원	
	87,000원	97,000원	
1. 제조인증 신청의 경우			
가.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			
나.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			
다.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. 다만,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심사결과통지서(통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해당합니다)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결과통지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			
2. 수입인증 신청의 경우			
가.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			
나.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 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			
다.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 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. 다만,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심사결과통지서(통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해당합니다)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결과통지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			
※ 수입하려는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이미 수입허가를 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(제조국・제조사 및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)의 동일한 제품임을 식품의약			
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			